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55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정춘생 · 최민희 · 이기현
문대림 · 김선민 · 강경숙
서왕진 · 이해민 · 백선희
신장식 · 최혁진 · 박은정
김준형 · 차규근 · 김재원
황운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과로·스트레스 등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

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 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11. “플랫폼 운영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12.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13. “온라인 플랫폼”이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호의”를 “제4호 및 제2항의”로 한다.

- ②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안전장비의 지원에 관한 조치
3. 노무제공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치
4.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량 및 노무제공 시간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5. 노무제공 중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개선 조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플랫폼 운영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노무제공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통하여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도 제4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노무제공자</u> ”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11. “ <u>플랫폼 운영자</u> ”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12. “ <u>플랫폼 이용 사업자</u> ”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13. “ <u>온라인 플랫폼</u> ”이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생략) <u><신설></u>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u>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생략)	<u>이용 사업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u> <u>2.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안전장비의 지원에 관한 조치</u> <u>3. 노무제공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치</u> <u>4.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량 및 노무제공 시간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u> <u>5. 노무제공 중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개선 조치</u> ③ -----제4호 및 제2항의-----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	--

<u><신 설></u>	같음) ② 플랫폼 운영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노무제공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통하여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도 제4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